

동원선박 운용에 필요한 해기사 소요 인원

김득봉* · 박태용*** · 정초영***

*, ** 목포해양대학교, *** 군산대학교

Number of Ship Officer Required for Mobilization Ship Operation

D. B. Kim* · T. Y. Park*** · C. Y. Jung***

*, **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 Kunsan National University

핵심용어 : 동원, 동원선박, 병력동원, 승선근무예비역, 해기사

Key Words : Mobilization, Mobilization Ship, Personnel Mobilization, Reserve Officer for Mobilization Ship, Ship Officer

동원 근거 법령

구분	동원 관련 법령
헌법	헌법(제 76조, 제 77조, 제 126조)
법률	비상대비지원관리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병역법(제 44조, 제 46조, 제 53조)
	예비군법(제2조, 제5조)
	민방위기본법(제26조)
	계엄법(제9조)
	징발법(제5조, 제6조)
	통합방위법(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5조)	
훈령, 지시, 예규	국가전경지도지침(대통령훈령 제284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602호)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병무청 훈령 제1350호) 등

동원가용선박(상선)

□ 동원가용 추정 척수(상선)

구분	계	500T - 1,599T	1,600T - 2,999T	3,000T - 5,999T	6,000T - 19,999T	20,000T 이상
국적 외항선	1,077	62	98	202	203	512
국적 내항선	612	344	119	115	30	4
합계	1,689	406	217	317	233	516

* 어선, 해외취업선, 500톤미만 선박 제외
□ 동원가용선박 운용에 필요한 해기사 인원

구분	외항선			내항선		
	동원가능 척수	최소 해기사 인원	해기사 소요인원	동원가능 척수	최소 해기사 인원	해기사 소요인원
계(1,689척)	1,077	-	8,560	612	-	3,514
일반화물선	486	8	3,888	134	8	1,072
컨테이너선	168	8	1,344	0	8	0
유조선	48	8	384	54	8	432
LPG운반선	50	8	400	12	8	96

<중략>

동원대상

구분	내용	
인적 자원 동원	병력동원자원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소집 자원	제2국민역, 소집면제보충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병역동원 제외자 등
	인력동원자원 (1종/2종동원)	중점관리대상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과학기술자외 면허,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세부터 6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물적 자원 동원	물자	무기, 탄약, 식량, 의류, 공산품, 의약품, 수송장비, 건설장비, 토지, 건물 등
	업체	생산, 수리, 보관, 판매, 운송, 건설, 통신, 의료기관, 기타 전쟁지원과 관련한업체

40세 미만 해기사 현황

구분	25세 미만	25-30세	30-40세	40-50세	50-60세	60세 이상
합계	16,070 (5,506)	913	2,531	2,062	1,914	3,913
외항선	소계	7,674 (3,929)	649	1,940	1,340	956
	항해사	4,015	294	979	759	575
	기관사	3,657	355	961	581	381
내항선	소계	5,942 (712)	164	193	355	633
	항해사	3,247	79	82	182	425
	기관사	2,695	85	111	173	208
해외 취업선	소계	2,456 (865)	100	398	367	325
	항해사	1,295	48	193	229	185
	기관사	1,161	52	205	138	140

*(): 40세 미만 해기사 인원

※ 동원가용선박 : 비상사태 발생 시 동원선박 대상이 될 수 있는 선박

* First Author : kdb@mmu.ac.kr

† Corresponding Author : sirpak75@mmu.ac.kr